

미국판례 1

보도주제 외의 부가적 보도가 명예훼손했을 경우 공익보도라도 면책될 수 없어

Williams v. Pulitzer Broadcasting Co. 706 5. W.20508 (미주리주 동부지역고등법원 판결, 1980.1.28)

사실개요

피고 플리처 방송국(KSDK)의 피고용자인 피고 크리스 콘돈이, 세인트 루이스시의회의 한 특별위원회가 원고를 소환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소환이유에 덧붙여 시의회와는 관련 없는 원고가 강도협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중죄인이라고 밝히고 원고의 집까지 방영하자 원고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해 위 보도는 공적인 위원회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면책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으나, 1 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현실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피고들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원고가 피고 콘돈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 심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을 취소하였다.

판결요지

1. 텔레비전 방송이, 시조사관들이 원고가 시로부터 두 몫의 봉급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원고가 독도기결수라는 등의 상세한 내용을 전했다면 그 명예훼손적인 발언은 시조사관들이 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텔레비전 방송국이 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다.
2. 사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에서 원고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텔레비전 방송국이나 보도자가 의식적으로, 명예훼손적인 보도진술의 책임 여부에 대하여 진지한 의심을 가졌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원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판결이유

재판장 판사 다우드, 판사 크라이스트, 판사 스니 더 심리.

주심판사 크라이스트 :

피고 크리스 콘돈과 피고 플리처 방송국(이하 KSDK)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호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원고에게 현실적 손해로서, 양 피고에 대하여 10 만달러, 징벌적 손해로서 피고 콘돈에 대하여는 2,500 달러, 피고 KSDK 에 대하여는 100 만달러의 배상을 인정하는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당 법원은 일부를 유지하고 일부를 취소한다.

세인트 루이스시의 KSDK-TV 채널 5 의 소유주 겸 경영자인 KSDK 는 크리스 콘돈을 기자로 채용하였다.

콘돈은 1978 년과 1979 년에 걸쳐 세인트 루이스시의 시의회 의 한 위원회인 보건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취재하였다. 위 위원회의 청문회와 회합의 대부분은 세인트 루이스시 시내에 있는 병사기념관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 어느 회의에서 콘돈은 로버트 윌리엄즈라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는데, 나중에 그 대부분이 허위임이 밝혀졌으나, 콘돈은 그 당시 그것이 허위임을 모르고 있었다.

특히 콘돈은 운패회가 로버트 윌리엄즈라는 사람을 소환할 것이라고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혐의는 그가 불법적으로 시사무를 맡아 하면서 그 보훈을 모두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윌리엄즈는 시당국에 대한 독도행위로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두번째 시사무에 대한 보훈은 절도혐의를 받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처벌을 받은 대가였다는 말도 있었다. 콘돈은 이전에 로버트 윌리엄즈란 이름을 가진 다른 두 사람이 위원회에 승환된 적이 있고 그 둘 중 누구도 위원회가 찾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위패회가 사람을 바로 찾았다고 확신했다. 명예훼손적 내용이 담긴 텔레비전 방송은 1978 년 8 월 18 일 오후 6 시와 10 시에 방송되었다. 오후 6 시 방송은 KSDK 앵커맨인 패트릭 에머리가 다음과 같이 보도를 시작했다.

「시의원 프리먼 보슬리 가 이끄는 세인트 루이스 시립병원들에 대한 조사반은 로버트 p. 윌리엄즈라는 인물에 대한 흥미있는 사건을 밝혀졌습니다. 윌리엄즈는 시로부터 이중으로 봉급을 받아왔는데 이는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지 시작일 뿐입니다. 크리스 콘돈이 좀 더 상세히 보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도입부 다음에 콘돈의 녹화된 보도가 계속되었다. 이 보도 중 화면부분(이 사건에 관한 모든 비디오 테이프가 소송에 앞서 관례에 따라 지워져 버렸으므로 구두증언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다.)에는 콘돈이 윌리엄즈가 동시에 두 개의 시사무를 맡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표들을 들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그런데 콘돈이 수표들을 들고 있는 장면이 윌리엄즈의 집인지 아니면 다른 장소인지에 대하여는 증거들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화면에는 윌리엄즈의 집이라는 취지와 그 성소가 쓰인 자막과 함께 윌리엄즈의 집이 비쳐졌다. 콘돈이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장면이 보였다.

그 보도의 말부분에서는 콘돈이 윌리엄즈가 유죄선고를 받은 중죄인으로 시립병원에 대한 보도사실을 인정하여 보호관찰에 처해진 바 있고, 동시에 두 가지 시사무를 맡고 있다고 말하고 나서, 그 수표들은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처벌을 받은 데 대한 대가이며, 윌리엄즈는 다음 주 정도에 시의회 위원회의 심문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10 시에 방송된 부분도 동일했다. 앵커맨 에머리가 다음과 같이 서두를 시작했다.

「시의회 조사관들은 절도기결단가 동시에 두가지 시사무를 맡고 있던 사건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P. 윌리엄즈이고 그는 시립병원에서의 한도사실을 인정하여 보호관찰에 처해졌습니다. 크리스 콘돈이 자세히 보도하겠습니다.」

약간 짧아졌으나 오후 6 시에 방송된 것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녹화된 콘돈의 보도가 뒤따랐다.

항소인들은 방송내용이 명예훼손적인 것이 아니었다고는 다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윌리엄즈가 유죄선고받은 중죄인이고 절도기결단라는 서술부분은 시의회위원회의 의장과 조사관이 그 회의 중에 한 사실보고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누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항소인들이 자인한 바와 같은 명예훼손적인 진술을 공표한 것은 불법행위에 관한 제 2 차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제 611 조의 원칙에 따라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명예훼손이 되는 사실의 공표가 공무상의 조치나 교동에 관한 것이거나 공공의 관심사가 되는 사건을 다루는 공개적인 회합에 대한 보도 중에 포함된 명예훼손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그 보도가 정확하고 완전한 것이거나 보도된 사건을 공정하게 요약한 것임을 조건으로 면책된다」

미주리시는 위 원칙을 채택해 왔다. 본건의 경우 위 보도가 시의회 위원회의 진행에 관한 공정하고 정확한 기술인 경우 외에는 면책되지 못하는 것이다.

위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피고는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 부담을 진다. 증명된 조건들에 의하여 면책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하는 판사에게 맡겨진 것이지 배심원들에게 맡겨진 것은 아니다. 본건에 면책특권이 수반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항소인들은 그 기사가 실제로 면책특권이 부여 될 수 있는 공적인 활동들에 대한 보도임을 증명하지 못했다.

오후 6 시 TV 방송보도는 KSDK-TV 스튜디오에서 앵커맨 에머리가 「시의원 프리먼 보슬리가 이끄는 세인트 루이스 시립병원들에 대한 조사만은 로버트 P. 윌리엄즈라는 인물에 대한 흥미있는 사건을 밝혀 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앵커맨의 말 중 어느 부분도 보슬리 시의원이나 다른 시의회 또는 시의회 조사관의 한 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

오히려 에머리가 말한 것이라고는 윌리엄즈가 두 몫의 봉급을 받고 있으며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 크리스 콘돈이 더 많은 것을 보도하겠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 다음에 콘돈의 녹화된 보도가 방송되었는데, 그 중 시의원이나 시의회의 기구에 대한 언급은 윌리엄즈가 그 다음주 정도에 위원회의 심문에 응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 외에는 없다. 그 보도가 말하고자 한 분명한 의도는, 위원회가 찰리엄즈 사건을 문제삼기 시작하였다는 것과 콘돈이 그에 관해 보도한 좀더 상세한 내용, 즉 윌리엄즈가 유죄선고를 받은 중죄인이라는 것이다. 콘돈은 그 보도내용에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하여 윌리엄즈의 집으로 간 것이었다. 그러므로 본건 명예훼손의 원인은 콘돈에게 있는 것이지 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보도에 조금이라도 시의회에 관하여 언급된 것은 현장보도에 앞선 앵커맨 에머리의 서두에서 한번, 그리고 윌리엄즈가 일주일정도 후에 시의회 강원회의 심문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단 두 군데 뿐이다. 이 사건 보적의 화면부분을 보더라도 그 외에 시의원에 관련된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송된 바대로의 위 보도는 시의회의 활동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도기결수」인 로버트 P. 윌리엄즈에 대한 것이다.

오후 10 시 보도에서 에머리는 스튜디오에서 「시의회 조사관들은 시의 사무를 동시에 두 가지 맡아 있던 절도기결인에 관한 사건을 밝혀냈습니다。」라고 방송의 서두를 시작했다. 이 부분은 위원회의 어느 특정 시의원이나 위원회에 연관되지 않았고, 위 정보가 언제 어떻게 발표되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 그 대신 그는 단지 「도둑」의 이름을 밝히고, 「크리스 콘돈이 상세한 보도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그 보도내용이란 것은 오후 6 시 방송된

부분을 약간 줄인 내용이었다. 오후 10시 보도 역시 시의회 활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윌리엄즈 개인에 관한 보도인 것이다.

만약 시의회가 윌리엄즈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한 이유에 관한 보도를 하였더라면 면책특권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면책받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보도 내용이 반드시 면책특권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절차의 보도이고자 노력한 경우라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진술은 위원회의 면책되는 진술이 아니라 발표하는 사람 개인의 면책되지 않는 진술이 될 뿐이다. 본건의 경우 보도내용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면 한 가지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즉 시의회 조사관들이 윌리엄즈와 그가 겸하던 두 가지 자료를 밝혀줬고, 콘돈이 좀더 상세한 보도를 하겠다는 것이다. 콘돈은 여기에 찰리엄즈가 일주일 내에 시의회의 심문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혐의가 위원회에는 새로운 사실이었고, 윌리엄즈가 소환되었을 때 조사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명백히 시사하고 있다. 원심이 본건에 보도의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보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심이 배심원들에게 면책특권의 남용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은 것도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윌리엄즈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인용될만한 청구원권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항소인들의 주장은 정당하다. 발표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사적 인물이라고 보여지는 윌리엄즈에 대하여 현실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발표된 사실의 허위성을 알았거나 무분별한 무시로 인하여 알지 못하여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발표하였다는 것과 같은 현실적 간과가 인정되어야만 인용될 수 있다. 본건의 경우 콘돈은 사실상 자신의 보도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명백하고도 설득력있는 증거에 의하여 콘돈이 그가 공표한 사실의 신빙성에 대하여 공표 당시 진지하게 의실적으로 의심을 품고있었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본건의 증거는 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했다.

윌리엄즈는 업실의 무분별한 무시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섯가지의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그 정보가 ①허위로서 성질상 명백히 명예훼손적이고, ②이를 입수한 소식통이 정치적이어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문제에 관하여도 이미 두 번씩이나 틀린 적이 있으며, ③ 병사기념관이나 채널 5 스튜디오에 매우 근접한 곳에서 그 발표내용을 쉽게 점검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상세한 조사없이 방송되었고, ④그 내용 조사의 필요도 없이 즉각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는 긴급뉴스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윌리엄즈는 채널 5의 수입액이 시청자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윌리엄즈는 채널 5의 수입추구와, 허위사실의 보도 사이에 무슨 합리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허위성의 입증이 악의의 입증도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혐의의 명예훼손적 이라거나 또는 조사해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악의가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취재원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정치적 소식통에 관한 일반적인 분위가 인정되기는 하나 그 어떤 증거에 의하더라도 정보제공자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이름을 가진 두 명의 다른 시의원이 이전에 위원회에 출두하도록 소환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위원회가 이번에는 사람을 바로 찾았다고 확신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는 콘돈이 정보의 정확성을 심각하게 의심할만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콘돈이나 KSDK-TV가 방송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심각하게 의심을 하였다고 분명하고 설득력있게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현실적 손해로서 10만달러의 배상을 인정한 판결부분을 유지하고 징벌적 손해로서 원고에게 피고 콘돈에 대하여는 2,500달러, 피고 KSDK에 대하여는 100만달러의 배상을 인정한 판결부분을 파기한다.